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4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20일

발 의 자 : 오 승 철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0.20.) 반영
○ 연가저축제 개선(8시간 미만 잔여연가 자동 이월·저축)
○ 공무관련 소환시 공가 사용가능 기관 ‘경찰’ 명시
○ 재해구호휴가 개정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사유 확대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1.12.31.) 반영
○ 난임치료시술휴가일수 확대(1~2일 → 2~4일)
○ 출산휴가 사용사유 ‘조산위험’ 추가
○ 소속 남성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조산휴가’ 추가
○ 공가사유 ‘감염병확진검사’ 및 ‘예방접종’ 추가
○ 복무실태 확인·점검 예시 ‘유연근무’ 추가
○ 공가부여기간 구체화
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 휴가사항 개정 반영
○ 장기재직휴가 실시대상 확대 및 신설(5년이상 10년미만 → ‘5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0. ~ 12. 5.

○ 의견내용 :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

하남시의회조례 제 호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출퇴근”을 “출퇴근, 유연근무”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휴가”를 신설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을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을 “검찰, 경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7조제3항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2회분할),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

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을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⑮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졸업 및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⑰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 (단, 제1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4.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② (생략) ③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 5. (생 략)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출퇴근, 유연근무----------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제15조(연가일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않은 ----------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제19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9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1. 같은 연도 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2. 같은 연도 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

	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26조(공가)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가) ---------- ---------- ----------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 검찰, 경찰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7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27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	③ ---------- ---------- ---------- ---------- ----------

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 <단서 삭제>
<신 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 설>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의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3회 분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5회 분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	⑨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2회분할), 10년 ----------

0일(5회 분할)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공무원----------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1. ----------

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 설>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 설>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⑭ (생 략)	⑭·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⑮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졸업 및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졸업 및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⑰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___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⑱___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___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 (단, 제1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4.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⑲___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 (단, 제1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4.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